

의안 번호	2371	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】
		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24. 12. 2.(월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2. 2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16.(월)

2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울산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민간 위탁
- 나. 위탁사무의 내용
 - 울산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시설 운영 및 관리
 - 그 밖에 울산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다.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
- 라. 위탁기간 : 2025. 3월 ~ 2030. 2월(5년)

4. 근거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5. 검토의견

-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체계 구축하고 공적 돌봄을 확대하여 초등학교령기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운영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 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민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근거법규

「아동복지법」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승인 및 동의)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